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0. 2. 28.>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입지기준 확인 통보

귀하가 . . . 신청한 공장입지기준확인 신청에 대하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확인합니다.

1. 신청인

성 명	생년월일	주 소

2. 공장설립예정부지

주 소	지 목	지적면적(㎡)

3. 사업개요

공장의 업종	업 종 명			
	분 류 번 호		기준공장면적률	%
	주 생 산 품		사 용 원 료	
공장의 규모	부 지 면 적	㎡		
	건 축 면 적	제조시설: ㎡ 부대시설: ㎡		
배출시설 설치계획 및 배출량	대 기			
	수 질			
	소음·진동			

4. 기 타

이 확인서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, 관계 법령 및 용도 지역·지구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( )에 관한 사항은 ( )의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붙임: 입지기준 세부명세서 1부. 끝.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전화( ) 전송( 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(일반용지 60 g / ㎡(재활용품))

※ 입지기준 세부명세서

구 분		해 당 사 항	공장입지제한 내용(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)	검 토 의 견 (가 · 불가, 조건부허가 등 구분)
수도권 정비계획	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	총량규제		
	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	(과밀억제, 성장관리, 자연보전권역) *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저촉되는 경우 이하 다른 법령에 의한 검토를 생략함		
도시관리계획	용 도 지 역	(제1종전용 · 제2종전용 · 제1종일반 · 제2종일반 · 제3종일반 · 준)주거지역, (중심 · 일반 · 근린 · 유통)상업지역, (전용 · 일반 · 준)공업지역, (보전 · 생산 · 자연)녹지지역, (보전 · 생산 · 계획)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*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저촉사항의 확인만으로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하 다른 법령에 의한 검토를 생략함		
	용 도 지 구	(자연 · 수변 · 시가지)경관지구 (중심지 · 역사문화 · 일반)미관지구 고도지구(m 이상 · 이하 또는 층 이상 · 이하) 방화지구 · 방재지구 (문화자원 · 중요시설물 · 생태계)보존지구 (학교 · 공용 · 항만 · 공항)시설보호지구 (자연 · 집단)취락지구 (주거 · 산업 · 유통 · 관광휴양 · 복합)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기타( )		
	용 도 구 역	개발제한구역, 도시자연공원구역, 시가화조정구역, 수산자원보호구역, 기타( )		
	도시계획시설	도로 · 공원, 기타( )		
	지구단위계획 구 역	(제1종, 제2종)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( ), 용적률( ), 층수( ), 건축물용도( ), 기타( )		
	기 타	개발밀도관리구역,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, 도시개발구역, 토지거래허가구역, 도시계획입안사항, 기타( )		

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	용도별구역	산업시설구역(공장, 기타), 지원시설구역,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		
	업종별 배치계획	(적합, 부적합, 입주제한)업종		
군사시설등	「공항시설법」	진입표면, 수평표면, 전이표면, 기타( )		
	「군용전기통신법」	군용통신설치지역, 기타( )		
	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	보호구역, 민간인통제선, 비행안전구역, 대공방어협조구역, 기타( )		
농지·산지 등	「농지법」	농업(진흥·보호)구역, 농지전용제한시설, 기타( )		
	「농어촌정비법」	농업기반등 정비사업시행지역, 기타( )		
	「축산법」	가축보호지역, 기타( )		
	「낙농진흥법」	낙농지구, 기타( )		
	「초지법」	초지, 기타( )		
	「산지관리법」	보전산지(공익용·임업용), 산지전용제한지역, 기타( )		
	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	야생동식물보호구역, 기타( )		
	「사방사업법」	사방지, 기타( )		
	「자연공원법」	(자연보존·자연환경·자연마을·밀집마을·집단시설)지구, 공원구역, 공원보호구역, 기타( )		
도로 하천 수면 등	「하수도법」	배수구역, 기타( )		
	「도로법」	(도로·접도)구역, 기타( )		
	「사도법」	사도개설 필요, 기타( )		
	「하천법」	하천구역, 하천예정지, 기타( )		
	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	댐건설기본계획지역, 기타( )		
	「한국철도공사법」	역세권, 기타( )		
	「내수면어업법」	조업수역, 연접수면, 기타( )		
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	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, 공유수면 매립면허, 기타( )		
	「어촌어항법」	어항구역, 기타( )		
	「항만법」	임항지역, 기타( )		
광업권 등	「광업법」	광구, 조광구, 기타( )		
	「온천법」	온천원보호지구, 기타( )		

환 경	「수도법」	상수원보호구역,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지역, 전용상수도, 기타		
	「환경정책기본법」	특별대책지역, 기타( )		
	「소음·진동관리법」	배출시설설치허가, 기타( )		
	「물환경보전법」	총량규제지역, 배출시설설치허가, 기타( )		
	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등(낙동강, 금강, 영산강, 섬진강)	수변구역, 기타( )		
	「대기환경보전법」	총량규제지역, 배출시설설치허가, 기타( )		
	「자연환경보전법」	생태경관보전지역, 자연유보지역, 기타( )		
	「환경영향 평가법」	영향평가대상사업 등, 기타( )		
	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	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, 기타( )		
기 타	「문화재보호법」	보호구역, 기타( )		
	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	자유무역지역, 기타( )		
	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	토지수용예정지, 사업인정고시지역, 기타( )		
	「국유재산법」	국유재산(도로·하천·도랑·제방), 기타( )		
	「자연재해대책법」	자연재해위험지구, 기타( )		
	「전원개발촉진법」	전원개발사업구역(발전소·변전소),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, 기타( )		
	「관광진흥법」	관광지지정, 기타( )		
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	분묘 개장, 기타( )		
	「원자력안전법」	제한구역, 기타( )		
	「택지개발촉진법」	택지개발예정지구, 기타( )		
	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	(국가산업·일반산업·도시첨단산업·농공)단지, 준산업단지, 공장입지유도지구, 기타( )		

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등 기타사항	
종 합 의 견	

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담 당 과	담 당 자	전 화 번 호	비 고